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471
------	------

2026. 3. 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김길영 의원 외 27명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3.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길영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청년과 청년 예술인의 범위를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연령

기준이 상이하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자치법규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조항번호에 오기가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 사항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청년 예술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 다. 조항번호를 수정함(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윤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연령기준이 법령마다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년’ 및 ‘청년예술인’을 각각 명확히 정의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조례는 제2조제1호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를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다만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하여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특히 「청년기본법」은 단서에서 ‘그 밖의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입법 목적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단서 또한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서울시 조례는 다음과 같음.

조례명	조 문	내 용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청년"이란 <u>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u>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제1호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세대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청년"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현 시행령에서는 삭제된 내용이므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개정 필요

조례명	조 문	내 용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청년"이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2조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2조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¹⁾ 에 따른다.

- 이로 인하여 조례를 해석·적용하고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혼선 또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집행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동 개정안이 제안하는 바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개정안의 타당성

- 안 제2조는 현행 조례가 같은 조 제1호에서 ‘청년 예술인’, 제2호에서 ‘청년’을 각각 정의하였던 규정을 안 제1호에서 ‘청년’, 안 제2호에서 ‘청년 예술인’으로 순서를 변경하고,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 설></u> 1.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서울	제2조(정의) ----- -----.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서울

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삭 제>

- 먼저, 순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청년이면서 예술인’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년’에 대한 정의가 우선 필요한바 두 용어의 체계상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음으로, ‘청년’의 연령 범위는 앞서 필요성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가 「청년기본법」 등 관계법령 및 조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하여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통일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현행 조례를 근거로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사업으로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업 지원’, ‘청년예술지원사업’ 및 기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 있으며, 해당 사업 모두 대상자 연령을 대체로 39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6년도에 신설된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또한 청년 예술인의 연령 범위를 39세 이하로 하고 있어

동 개정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대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사업주체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연령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	창작지원금 지급	39세 이하
	예술플러스창업	창업 역량강화	39세 이하
	실무강의	예술 현장 실무지식 및 경험 교육	제한없음
	연구모임	네트워크·스터디·실습	39세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보조)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1,000명 대상 1인당 연 900만 원 지원	39세 이하

○ 비록 동 개정안으로 인하여 관련 사업의 대상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의 규정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두는 것이므로²⁾, 동 개정안은 이에 기여하는바 타당하다고 하겠음.

2)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p. 90)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71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김길영, 강석주,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춘선,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이효원, 정지웅,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8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청년과 청년 예술인의 범위를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연령 기준이 상이하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자치법규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조항번호에 오기가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 사항에 따라 규정함 (안 제2조제1호)
- 나. ‘청년 예술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에 따라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 다. 조항번호를 수정함 (안 제5조제3항~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1.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② ~ ④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p> <p style="margin-left: 20px;"><u><삭 제></u></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청년과 청년 예술인의 범위를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연령 기준이 상이하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해 자치법규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정의)에서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고, 제2조제1항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제2조”에서 “제2조제1호”로 정정하여 조문 간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3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